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321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담당변호사 전현규

변론 종결2023. 5. 10.

판결 선고2023.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320,539원과 그중 822,660,266원에 대하여 2023. 3. 9.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영화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배급업, 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2) 원고와 C는 2019. 7. 24. C가 'D'라는 제목의 영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고는 판권료 9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콘텐츠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원고는 2019. 8. 6.까지 C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권료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의 계약 미이행 및 회생절차 개시

- 1) C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영화개봉일인 2020년 4분기까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영화콘텐츠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
- 2) C는 2022. 1. 17.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0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판권료를 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화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판권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C는 원고의 직원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900,000,000원을 지급할테니, C가

투자조합을 통하여 원고측이 투자·제작하는 영화 'F'에 투자해 달라. 그러면 추후 원고측 투자조합을 통하여 C가 요청하는 다른 영화에 투자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추후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원고측이 투자·제작하는 영화 'F'에 5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애초부터 C가 요청하는 영화에 투자를 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C의 투자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측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C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된 이상 C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판권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C의 판권료 반환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2) C는 위와 같은 E의 기망에 속아 영화투자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C에 대하여 투자작품 정산금 및 부가판권매출 정산금 84,552,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채권과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영화개봉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영화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22. 5.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2. 5. 2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판권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9. 8. 6.부터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그 지급청구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법정이자의 기산일을 2019. 8. 2.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피고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로부터 영화 'F'의 각본 등을 전달받았고 영화 'F'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인 G에 40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또는 E이 C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자동채권의 존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E이 C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산금채권

C가 원고에 대하여 2023. 3. 8. 기준으로 투자작품 정산금 및 부가판권매출 정산금 합계 77,339,734원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그 밖에도 추가로 7,212,611원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정산금으로 77,339,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판권료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수동채권인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일인 2022. 5. 22.이고, 자동채권인 C의 정산금채권의 이행기는 그 정산기준일인 2023. 3. 8.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모두 2023. 3. 8.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4. 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3. 3. 8. C의 정산금채권과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3) 상계충당 피고는 C의 정산금채권 전액을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 원금에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위 정산금채권을 위 판권료 반환채권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계적상일인 2023. 3. 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은 원금 900,000,000원과 법정이자 193,808,219원[=

900,000,000원 $\times$ (3 + 215/365) $\times$ 6%, 원 미만 버림]이고, C의 정산금채권은 전액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판권료 반환채권은 원금 822,660,266원(= 900,000,000원 - 77,339,734원)과 이자 193,808,219원 합계 1,016,468,48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016,468,485원과 그중 원금 822,660,266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3. 3. 9.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6,468,485원과 그중 822,660,266원에 대하여 2023.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원석

판사구세희

판사김부성